Mongolia

몽골사무소

통관절차 해박해야 몽골 수출길 활짝 열린다

몽골수출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통관정보

한국의 많은 농식품기업들이 신흥 수출유망국가 중 하나인 몽골로 진출을 시도하지만 몽골의 식품통관 및 관련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❶ 충족되어야 할 요구사항

먼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몽골에 등록된 합법적인 법인에 의해서만 식품을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몽골의 공장과 직접 또는 공식적인 계약대리점과 무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수입하려는 식품은 법에 명시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품의 경우 식품의 유통기한이 전체의 2/3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90일의 유통기한을 가진 식품이라면, 60일 이상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식품이 수입되어야 한다.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 저장기준과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는 지정된 창고, 차량을 소지하거나, 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법인, 조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몽골에도 식품 안전법이 있다. 따라서 수출입 식품의 원료 및 제품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수출입 식품의 원료 및 제품의 사용은 위험에 기초한 통제와 검사를 한다. 또한 수입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몽골, 국제적인 기준, 지역적인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수입 식품의 원료, 식품을 상표에 표시된 조건에 따라 보관한다. 몽골은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고기, 우유, 곡물, 밀, 밀가루, 식수를'전략 식품'으로 정하고, 따로 관리한다. 몽골 식품부는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출 및 수입되는 전략적 식료품의 유형과 양을 정하는데, 규정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전략 식품의 수출입 허가를 부여한다. 몽골 정부는 2013년 결의안 제 77호에 따라 전략 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를 부여하고, 임시 규정을 승인했다.

❷ 몽골의 수입통관 절차

몽골 측에서 외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식품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서 – 신고서 처리(세관) - 관세(사전납부) – 신고수리 – 상품인도(보세구역) - 관세(사후납부)의 과정이 요구된다.

먼저, 외국으로부터 몽골에 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게 된다. 수입신고 전에 수입 화주는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사전 구비해 놓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나 화주가 직접 신고 가능하며,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 대상을 선별하여 신고인에게 접수를 통보하고, 물품검사, 서류검사, 전산화면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결재등록이 완료된다.

관세 납부는 사전납부와 사후납부로 나누어진다. 사전납부의 경우,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한다. 몽골에서는 이미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해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며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에 수리내역이 통보된다.

수입식품 신고 및 수리가 완료되면 보세구역에 위치한 상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데 보세구역 설명인은 수입화주의 상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상품을 인도해주며 관세 등은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관세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납부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금융기관은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수입통관절차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송장(INVOICE) » 선하증권 » 포장명세서 » 원산지증명서
» 검사 - 검역 - 허가 - 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
» 관세감면 증빙서류 » 합의세율 적용승인서
»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

| 주요품목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

	품목	최혜국 관세율	부가가치세
	커피, 차, 마테와 향신료	5%	10%
	위스키	10%	
	베르무트와 식물이나 향기로운 물질로 맛을 낸 신선한 포도로 만든 와인	20%	
	보드카	4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다른 부분	5%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조제품; 패스트리쿡스 제품	5%	

❸ 몽골의 부가가치세 법안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납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몽골의 부가가치세 세율 역시 10%이며, 상품 수입시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특히, 외국에서 몽골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관세시가에 관세 및 특별세를 더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음료, 잼, 분유 등 몽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들의 관세는 천차만별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0%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몽골 역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품목이 존재하는데, 몽골 영토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그리고 유엔 등 전문기구들이 사용하기 위한 수입품과 같이 외교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들이 그 중 하나이다. 또한 경찰, 국가안전보장국, 판결 집행국 및 부패 방지 기관의 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무기 및 특수 장비, 개발 초기 5년간 수입된 특수 목적 차량, 기계, 장비, 부속품, 원자재, 화학품, 폭약 및 예비 부품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품목이 면세 품목에 해당한다.

❹ 몽골의 식품법 위반에 대한 제제

몽골에서 위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540만 ~700만 투그릭(243만 ~ 3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혹은 1~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한다. 해당 법을 어겨 인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막심하면 1천만 ~ 4천만 투그릭(450만 ~ 1,8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8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법인을 대신하여 법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인을 특정 유형의 활동 운영권을 축소하고 1천만 ~1억 투그릭(450만 ~ 4,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법과 몽골 국제 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품은 몽골의 국경 및 관세 국경을 통해 불법 통과를 한 경우, 45만~540만 투그릭(약 20만 ~ 243만 원)의 벌금 혹은 240~720시간 동안 사회봉사에 참석해야 한다. 아니면 1달~1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한다. 또한 해당 범죄를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경우 법인을 특정 유형의 활동 운영권을 축소하고 1억~ 4억 투그릭(4,500만 ~ 1억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Key Point

통관규정의 사전숙지 반드시 필요

- 몽골 뿐 아니라 각국의 식품수입에 대한 규제는 해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항목은 더욱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수출업체는 관련 통관규정 및 법안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